

한성 1918 - 부산생활문화센터 대관규정

2024. 2.

부산문화재단

한성1918 - 부산생활문화센터 대관규정

제3장 대관

제10조(대관신청 및 절차)

1. 대관은 센터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이용하여 실제 행사를 하기 위한 대관을 말한다.
2. 대관은 부산시 및 부산문화재단 자체 행사 및 센터 자체 대관일정을 우선으로 한다.
3. 1층 청자홀의 대관
 - 가. 1층 청자홀의 대관은 별지 제 2호의 서식과 별지 제 5호의 서약서, 자유 양식의 공연 및 행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지정된 기간 내에 홈페이지 대관 신청 시 첨부파일에 첨부하여 접수한다.
 - 나. 매월 1일~15일을 신청기간으로 하며, 매월 20일 이내에 심의 후 승인 안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터의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다. 대관 신청자가 사용허가신청서 제출 후 대관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관변경 신청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사용자가 공연 등을 위하여 무대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마. 청자홀 대관 시 음향 및 조명 오퍼레이터가 상주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대관을 신청하여야 한다.
4. 그 이외의 공간들에 대한 대관
 - 가. 부산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 대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 후 심의를 통해 승인 안내한다.
 - 나. 매월 지정된 기간 내에 익월의 대관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다.
 - 다. 센터는 대관 신청일 기준 5일 이내에 승인 안내를 하여야 한다.
 - 라. 대관 신청 마감일은 매월 25일로 지정한다.
(단, 원하는 대관 날짜 5일 전까지만 신청 가능)
 - 마. 대관 신청 변경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미리 신청한 대관을 취소 처리 한 후 실제 대관 날짜로 다시 신청한다.
대관일 변경도 실제 대관 날짜 5일 전까지만 취소 및 신청이 가능하다.
5. 기본적으로 대관은 준비 및 리허설, 철거(정리)시간 등을 포함한다.

6. 매월 한 단체 혹은 개인의 이용 대관 최대 일수는 10일까지 가능하다.

제11조(대관 승인)

1. 센터는 대관시스템을 통해 대관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대관 신청인에게 문자 혹은 유선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2. 대관심의에 있어 대관의 필요성, 공간 사용의 목적성, 행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한다.
3.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4. 대관계약서는 사용허가 신청서 및 홈페이지 대관시스템으로 대체한다.

제12조(대관료 및 감면)

1. 대관료는 별지 제 1호 표에 따른다.
2. 사용자는 승인 안내를 받고 2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기간까지 대관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대관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확인이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4. 부산시 및 부산문화재단 자체 전시·공연·행사는 대관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제13조(대관 취소 및 환불)

1. 절차에 따라 입금한 대관료는 임의로 환불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다.
 -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미사용 일 수에 해당되는 대관료 반환)
 - 나.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미사용 일수에 해당되는 대관료 반환)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이 취소된 경우
 - 가. 대관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100% 환불
 - 나. 대관예정일 5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대관료 환불 불가
3. 청자홀의 대관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4호 사용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대관료 환불은 대관시스템으로 취소 내역을 확인한 후 절차를 거쳐 센터에서 지정한 날짜에 일괄 계좌이체 한다.

제14조(대관의 제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 가. 공간을 개인이나 단체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나. 행사의 내용이나 수준이 센터의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정치적 목적, 종교적 행사, 특정이념 전파, 유사판매 행위 등의 행사
 - 라. 시설물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거나, 유지관리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 마. 지정된 일자에 대관료를 완납하지 못한 경우
 - 바. 대관 이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력이 있는 경우
 - 사. 기타 센터 사정에 따라 대관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센터의 시설 및 부대설비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담당직원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
2.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대관에 따른 사용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3.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현수막 등 임시 게시물을 부착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대관 중 음식물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사용자로 인하여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6. 사용자는 센터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7. 사용자는 대관시설에 관련하여 센터 직원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
8. 사용자가 위의 항목들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행사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으며, 향후 대관에 있어서 해당 단체의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배상책임)

1.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경우 센터는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이나 관련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제17조 1항에 의거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행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행사 진행(준비 및 철수시간 포함)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전협의한 사항을 이행하였음에도 센터의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책임범위를 결정한다.

4. 사용자가 센터의 시설 및 부대설비, 부속비품(열쇠, 이동장비, 기자재, 집기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5. 사용자는 센터가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7조(규정의 효력)

1. 이 규정은 계약당사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또는 일반관례에 따르며, 해석에 대해서는 센터의 해석을 따른다.
3. 사용자가 필요에 의하여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서에 미리 기재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규정 위반시 책임 및 관할법원)

1.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위반자가 책임지며, 센터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법적분쟁 발생 시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